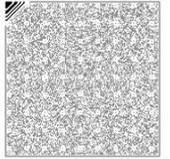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(1.30) 안내

1. 보험급여과-376(2020.1.26.)호, 462(2020.1.29.)호 관련입니다.
2. 위 호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<붙임1>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수정내용 :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
 - (기존) 확진, 의사환자, 조사대상유증상자 → (확대)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
 - 나. 수정사유 : 감염 확산 예방조치
 - *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
 - (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,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)

붙임 :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주무관 **김소연** 행정사무관 **이선식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0.1.30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485 (2020. 1. 30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4 / gicsy@korea.kr / 대국민 공개